

2022 법인세 신고대비  
개정 및 실무이슈

# FOCUSING SPOT SERIES 2



---

## 2021 세무조정 시 주요개정이슈

---



YOUR BEST HRD PARTNER  
씨에프오아카데미  
www.cfoi.kr



TEL (02) 501-2322 FAX (02) 561-6581

# 2021 세무조정 시 주요개정이슈

## - 통합투자세액공제 -

### 1 적용대상 (중고 및 운용리스 제외, 토지는 시설로 보지 않으므로 제외)

#### 1 일반목적 유형자산

		종전 유권해석	
적용대상	기계장치, 시설장치		
적용제외	토지		
	건축물	- 인테리어 비용은 적용제외	- 부속설비 포함, 기계 및 시설장치 전용 건축물은 제외 - 장애인 계단, 경사로 등 구조변경비용은 특수목적(근로복지)에 해당 - 관광숙박업 등 특수업종 가능
	차량운반구		- 운수업은 제외
	공구기구		
	비품	- 사업에 직접사용&독립적 사용(보조활동 사용 불가)&직접수입 발생 (예) 호텔의 가구, 컴퓨터학원의 교육용 컴퓨터, 영화관의 관람석의자	- 건당 20만원이상&대량보유 비품은 제외 (공제 가능)
	무형자산	- 보조활동 : 회계, 창고, 구매, 판촉, A/S 등은 공제불가 (예: 계산대 POS/PC 장비)	

#### 2 특수목적 유형무형자산

적용대상	연구, 에너지, 환경, 근로복지, 안전 등의 시설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# 3 운수업 등 특수업종

적용대상	관광숙박업 건축물, 건설업 중장비, 운수업영위 중소기업 및 도소매, 물류산업의 필수 차량운반구, 어업의 선박, 중소기업 업무용(일반사무용 제외) 소프트웨어
------	--

#### 4 신성장원천기술

적용대상	신성장, 원천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## 2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→ 2021.1.1.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종전 투자세액공제	2021.1.1.이후 과표 신고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</li> <li>·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</li> <li>· 의약품시설투자세액공제</li> <li>· 초연결네트워크시설투자세액공제</li> <li>· 신성장시설투자세액공제</li> </ul>	통합투자세액공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열거된 자산만 공제가능</li> <li>· 운휴중인 자산 공제불가</li> <li>·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(주된 사업 판단)</li> <li>· 2020개정(즉시상각의제 대상 적용배제)</li> <li>·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요건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R&amp;D비용이 수입금액 2%이상</li> <li>- 전제 R&amp;D비용중 신성장원천 10%이상</li> <li>- 전기대비 당기 상시근로자 감소불가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반목적 시설의 유형자산 도입</li> <li>· 규정삭제로 공제가능</li> <li>·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종전 동일로 해석</li> <li>· 규정없음(동일하게 해석)</li> <li>· 신성장기술 요건삭제 → 규정완화</li> </ul>
2020년	2021년
모든 투자자산 → 종전 공제 또는 통합선택	모든 투자자산 → 종전 공제 또는 통합선택
<p><b>'20 · '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</b></p> <p>(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,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)</p>	